

부속서 II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중국

주해

1. ① 양허표는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중국의 약속을 규정한다.
2. ② 이 양허표상의 분야 분류는 국제연합 통계사무소의 1991년 잠정 중앙상품분류(CPC)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순서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1991년 7월 10일자 MTN.GNS/W/120에서 사용한 분류 체계를 반영한다.
3. ③ 약속 안함*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하지 않음을 말한다.
4. ④ 부속서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에서 중국의 투자에 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은 서비스 투자에 관한 유보항목의 어떠한 측면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유보항목에 관한 모든 측면은 이 양허표에서만 다뤄진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I. 수평적 양허 | | | |
|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¹ | <p>(1) (2) (3) (4): 공공 목적으로 수립되거나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에 관하여 약속 안함. 그러한 서비스는 공공 독점 또는 민간 운영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p> <p>다른 당사자가 부속서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또는 부속서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에서 자신의 양허표상 자신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 중국은 그 다른 당사자에</p> | <p>(1) (2) (3) (4): 공공 목적으로 수립되거나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에 관하여 약속 안함. 그러한 서비스는 공공 독점 또는 민간 운영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p> <p>다른 당사자가 부속서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또는 부속서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에서 자신의 양허표상 자신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 중국은 그 다른 당사자에</p> | |

¹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자회사”에 대하여 약속한 경우, 외국인의 다수 또는 소수 지분 소유 또한 허용된다. “외국인의 다수 지분 소유 허용”에 대하여 약속한 경우, 외국인의 소수 지분 소유 또한 허용되나, 외국인의 다수 지분 소유는 완전 외국인 소유라는 의미는 아니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p>유지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 중국은 그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투자 심사를 포함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p> <p>(3) 이 양허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회사”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투자되고 「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중국 영역 내에서 등록된 기업을 지칭하며 이 양허표의 구체적 분야에 규정된 조건과 제한을 조건으로 함.</p> | <p>대하여 투자 심사를 포함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p> <p>(3)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p>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점에 관한 법과 규정이 제정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 하위분야에 달리 적시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한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은 허용되지만, 분야별 구체적 약속의 CP C 861, 862, 863, 865상의 대표사무소를 제외하고 이윤 추구 활동에 종사하지 않음.</p> <p>중화인민공화국의 토지는 국가 소유임. 기업과 개인에 의한 토지 이용은 다음의 최대 기간 제한의 적용대상임.</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p>(a) 거주 목적인 경우 70년</p> <p>(b) 산업 목적인 경우 50년</p> <p>(c) 교육, 과학, 문화, 공중 보건 및 체육 목적인 경우 50년</p> <p>(d) 상업,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인 경우 40년</p> <p>(e) 포괄적 이용 또는 그 밖의 목적인 경우 50년</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중국의 양허표에 언급된 범주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관한 조건, 제한 또는 자격 외에는 약속 안함.</p> | <p>(4) 시장접근란에 언급된 범주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관한 조건, 제한 또는 자격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II. 구체적 약속 | | | |
| 1. 1. 사업 서비스 | | | |
|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 중국법 실무는 제외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법무회사는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 대표사무소는 이윤 추구 활동 에 종사할 수 있음. 외국 대표사무소의 사업 범위 는 오직 다음과 같음. (a) 법무회사의 변호사가 변호 사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 도록 허용된 그 나라/지역 의 법률과 국제 협약 및 실무에 관한 자문을 고객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대표자는 매년 6개월 이상 중국에 거주함. 대표사무소는 중 국인 등록 변호사를 고용해서는 안됨. | 중국의 법,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중국 (상해) 시범자유무역지구 (“FTZ”)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외국 법무회사는 FTZ 내 중국 법 무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그러한 계약에 기초하여, 그 외국 법무회사와 중국 법무회사는 서로 에게 소속 변호사를 법률 자문가로 서 파견할 수 있음. 앞서 언급한 파견의 경우, 중국 법 무회사는 중국법과 국제법 실무에 관한 법률 자문가로서 소속 변호사 를 외국 법무회사에 파견할 수 있 고 외국 법무회사는 외국법과 국제 법 실무에 관한 법률 자문가로서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p>에게 제공</p> <p>(b) 고객 또는 중국 법무회사 에 의하여 위탁된 경우 법 무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 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도 록 협용된 그 나라/지역의 법률 사무의 취급</p> <p>(c) 외국인 고객을 대리하여 중국 법무회사에 중국 법 률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 탁</p> <p>(d) 법률 사무를 위하여 중국 법무회사와 장기 위탁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 의 체결, 그리고</p> <p>(e) 중국 법률 환경의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p> | | <p>소속 변호사를 중국 법무회사에 파 견할 수 있음을 말함. 양측은 그들 각자의 사업 범위 내에서 협력함.</p> <p>중국의 법,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중국 (상해) 시범자유무역지구 (“FTZ”)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외국 법무회사는 상해 FTZ 내 중 국 법무회사와 상업적 제휴를 수립 하는 것이 허용됨. 상업적 제휴의 의 유효성 내에서 양측의 그 두 개 의 법무회사는 각각 독립적인 법적 지위, 상호 및 재정 운용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짐. 그 상 업적 제휴의 고객은 상해 FTZ 내 로 한정되지 않음. 이 유형의 상업 적 제휴의 외국인 변호사는 중국 법 실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p>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p>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위탁 은 외국 대표사무소가 위탁된 중국 법무회사의 변호사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 법무회사의 대표는 당사 자 내 변호사협회의 회원이며 중국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실무를 한 변호사임. 수석대표 는 당사자의 법무회사의 파트 너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 (예, 유한법무회사의 구성원) 로 중국 외 지역에서 3년이상 실무를 한 자임.</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p> | 않음.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파트너십 또는 유한회계법인은 중국 당국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인 회계사(CPAs)에 한정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회계법인은 중국 법인과 제휴하는 것과 다른 당사자들 내에 있는 그들의 제휴된 법인과 계약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됨. - 중국 국가 공인 회계사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에 대한 면허의 발급에 내국민 대우가 부여됨. - 신청자는 신청이 제출된 후 30일 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 받을 것임. - CPC 862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은 세무와 경영 자문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음. 그 회계법인은 CPC 865와 8630의 설립의 형태에 관한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c) 세무 서비스 (CPC 8630)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d) 건축 서비스 (CPC 8671) | (1) 계획 설계에 대하여 제한 없음. 계획 설계를 제외하고 중국 전문 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됨. | (1) 제한 없음. | |
|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 (2) 제한 없음. | (2) 제한 없음. | |
|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 (3) 제한 없음.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g) 도시 계획 서비스 (일반 도시 계획은 제외됨) (CPC 8674)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h) 의료 및 치과 서비스 (CPC 931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의 수요에 따른 양적 제한을 조건으로 중국 파트너와 부분 외국인 투자 병원이나 진료소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며 외국인의 과반수 지분 소유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와 다음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본국에서 발급된 전문 자격증이 있는 외국 의사는 보건당국으로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부분 외국인 투자 병원과 진료소의 의사와 의료인력 과반수는 중국 국민임.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부터 면허를 취득한 후 중국에서 단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서비스 기간은 6개월까지 될 수 있으며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 | |
|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는 공급의 수단으로서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컨텐츠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되는 경제적 활동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자격은 다음과 같음: 공인된 엔지니어 또는 학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그 분야에서 3년의 경력이 있는 인력.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a) 컴퓨터설비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 | | |
|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CPC 842) | (1)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 |
|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CPC 843) | (2) 제한 없음. | (2) 제한 없음. | |
| (d) 입력 준비 서비스 (CPC 8431) |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 (3) 제한 없음. (4) 자격은 다음과 같음: 공인된 엔지니어 또는 학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그 분 야에서 3년의 경력이 있는 인력. | |
| (e) 데이터 처리와 도 표 작성 서비스 | (1)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CPC 8432) (f) 시분할 서비스 (CPC 8433) |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자격은 다음과 같음: 공인된 엔지니어 또는 학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그 분야에서 3년의 경력이 있는 인력. | |
|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용 기계 및 기기 에 대한 정비 및 수리 서비스(CPC 845 및 886)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D. 부동산 서비스 (a) 자산 소유 또는 자산 리스를 포함하는 부동산 서비스 (CPC 82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b)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부동산 서비스(CPC 82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E. 임대 및 리스 서비스(CPC 831, 832, CPC83202는 제외 됨)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 됨.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미화 5백만 달러의 세계적 자산을 보유할 것이 요구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 됨.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미화 5백만 달러의 세계적 자산을 보유할 것이 요구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 |
|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a) 광고 서비스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CPC 871) |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b) 시장조사 서비스 (CPC 86401, 시장에서 조직의 제품의 전망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사 서비스에만 한정됨)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외국인이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만 허용됨. 경제적 수요심사가 요구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상업적 주재에 대한 요건.</p>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c) 경영 컨설팅 서비스(CPC 865)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d)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다음의 하위분야에만 한정 됨) - 건설을 제외한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CPC 86601)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이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만 허용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됨.</p>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본국에서 3년을 초과하여 조사 서비스에 종사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미화 350,000달러 이상의 등록된 자본으로 기술적 검사, 분석 및 화물 조사를 수행하는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이 허용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f)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4)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이 과반수지분을 소유한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만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g) 제조업 부수 서비스(CPC 88442를 제외한 CPC 884, 885, 그리고 중국)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법과 규정에 의하여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금지되거나 제한된 산업 및 중국이 자신의 국가 안보 이익에 관련된다고 여기는 서비스는 제외됨). | <p>(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h) 직업 소개 및 공급 서비스(CPC 872, CPC 87209는 제외됨)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외국인이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만 허용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p>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에는 약속 안함. | 는 약속 안함. | |
| (i)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CPC 8675) - 지질학적, 지구 물리 학적(광역 중력 및 자력 예측 서비스는 제외됨)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 - 지표 밑 조사 서비 스(CPC 8675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하에 석 유 시추 형태만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 | |
| - 육상 유전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p>(3)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또는 중국석유화학공사(SINOPEC) 와의 협력하에 중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지정된 지역에서 석유 시추의 형태로만 허용됨.</p> <p>석유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영역 내에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며 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진행함.</p> <p>그 사무소의 주소는 CNPC 또는 SINOPEC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됨.</p> <p>그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영역 내에서 외환 사업에 종사하기 위한</p> | <p>(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CNPC 또는 SINOPEC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석유 작업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CNPC에 석유 작업과정에 관한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회계적 그리고 행정적인 보고서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샘플을 제출함.</p> <p>CNPC 또는 SINOPEC는 그 석유 작업과정의 시행 중에 취득된 데이터 기록, 샘플, 바우처와 그 밖의 원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짐.</p> <p>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투자는 미화나 그 밖의 경화로 이루어짐.</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p>승인을 받은 은행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 정비 및 수리 서비스(CPC 633, 6112, 6122)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o) 빌딩 청소 서비스 (CPC 874) |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완전 외국 소유 기업이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 사진 서비스 (CPC 875)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이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만 허용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q) 포장 서비스 (CPC 876)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r)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포장 재료 인쇄(포장 재료의 인쇄에만 한정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p>(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s) 컨벤션 서비스 (CP C 87909)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이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만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 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자격은 다음과 같음: 3년의 번역 또는 통역 경험과 작업 언어(들)를 자유자재로 구사 함.</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 | |
| B. 쿠리어 서비스 (CPC 75121, 2001 년 12월 11일 중국 의 세계무역기구 가 입시의 관련 법에 의 하여 중국 우편 당국 에 특별히 유보된 것 은 제외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 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C. 통신 서비스²</p> <p>다음을 포함하는 부가 서비스</p> <p>(h) 전자 메일</p> <p>(i) 음성 메일</p> <p>(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검색</p> <p>(k) 전자적 데이터 교환</p> <p>(l) 고도 또는 부가 팩시 밀리 서비스(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함)</p> <p>(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p> | <p>(1) 형태 3 참조.</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부분 외국인 투자 부가 통신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며 그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² 중국의 약속은 다음에 따라 양허된다: 여기에 첨부되는 기본 통신 서비스의 약속에 관한 양허를 위한 주석(S/GBT/W/2/REV/1)과 주파수 가용성에 관한 시장 접근 제한(S/GBT/W/3).

모든 국제 통신 서비스는 여기에 첨부되는 첨부 2 의 참조 문서 제 5 항의 원칙에 따라 독립된 규제 당국으로 활동하게 될 중국 통신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설립된 관문을 통한다.

허용되는 지분 참여의 수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분야의 추가 자유화는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새로운 무역 협상 중 서비스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n) 온라인 정보 또는 데 이터 처리(거래 처리 를 포함함)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기본 통신 서비스 - 페이징 서비스 | <p>(1) 형태 3 참조.</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중국은 여기에 첨부되는 첨부 2의 참조 문서에 포함된 의무를 약속함. |
|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 아날로그/디지털/셀룰러 서비스 - 개인 통신 서비스 | <p>(1) 형태 3 참조.</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만 설립이 허용되</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p>며, 그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 국내 서비스 (a) 음성 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g) 국내 전용 회선 서비스 | <p>(1) 형태 3 참조.</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만 설립이 허용되며, 그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음성 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g) 국제 비공개 사용자 그룹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전용 회선 서비스 사용이 허용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 시청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및 (CPC 83202)를 포함하는 비디오 배급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청각물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중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p>GATS하의 중국의 약속에 따라, 그리고 영화의 행정에 관한 중국의 규정의 준수를 저해함이 없이, 중국은 수익분배에 기초한 극장 상영 영화의 수입을 허용하며, 그러한 수입 편수는 연</p>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p>이,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영화를 제외한 시청각물 배급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파트너와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간 20편임. |
| - 녹음물 배급 서비스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시청각물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중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영화를 제외한 시청각물 배급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파트너와 부분</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 GATS하의 중국의 약속에 따라, 그리고 영화의 행정에 관한 중국의 규정의 준수를 저해함이 없이, 중국은 수익분배에 기초한 극장 상영 영화의 수입을 허용하며, 그러한 수입 편수는 연간 20편임.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p>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p> | |
| - 영화관 서비스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영화관 건 축 또는 개축이 허용되며 외국인 투자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 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CPC 511, 512, 513 ³ , 514, 515, 516, 517, 518 ⁴) |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은 허용 됨.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은 다음 4가지 유형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만 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투자 또는 원조로 전액 출자된 건설 프로젝트. 국제 금융 기관의 융자로 출 자되고 융자의 조건에 따라 국제적인 입찰을 통하여 낙찰 되는 건설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가 50퍼센트 이 |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 중국 (상해) 시범자유무역지구 (“FTZ”)에 설립된 외국 건설 기업은 상해에서 중국인-외국인 공동으로 건설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한 상황에서 그 외국 건설 기업은 그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 비율 요건이 면제될 것임. |

³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관련된 준설 서비스가 포함된다.

⁴ CPC 518의 적용범위는 외국 건설 기업의 서비스 공급 시 그 기업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운전자를 동반하는 건설 또는 철거 기계의 임대 및 리스 서비스에만 한정된다.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상인 중국인-외국인 공동으로 건설되는 프로젝트와 중국 건설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투자가 50퍼센트 미만인 중국인-외국인 공동으로 건설되는 프로젝트.</p> <p>4. 중국 건설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중국인 투자 건설 프로젝트는 성(省) 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과 외국 건설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4. 유통 서비스 (첨부3의 정의에 따름) | | | |
| A. 위탁 중개인 서비스 (소금, 담배는 제외 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 외국인 투자 기업은 시장접근이 나 분야 또는 하위분야별에 나 열된 제품을 포함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그 기업의 제품의 유통과 첨부 3에 정의된 하위 서비스의 제공이 허용됨. |
| B. 도매 서비스 (소금, 담배는 제외 됨) |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이 유통하는 제품에 대하여 첨부 3에 정의된 판매 후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관련 하위 서비스의 제공이 허용됨.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C. 소매 서비스 (담배는 제외됨) | <p>(1) 우편 주문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다음을 제외하고,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 다수 공급자로부터의 여러 다른 종류와 상표의 제품을 판매하는 3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체인점. 3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그러한 체인점은 다음의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외국인의 과반수 지분 소유가 허용되지 않을 것임: 도서, 신문, 잡지, 의약품, 살충제, 멀칭필름, 가공유, 화학 비료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p> | <p>(1) 우편 주문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 <p>외국인 투자 기업은 시장접근이나 분야 또는 하위분야별에 나열된 대로 그 제외된 제품을 포함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자신의 제품을 유통할 수 있고 첨부 3에 정의된 하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이 유통하는 제품에 대하여 첨부 3에 정의된 판매 후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관련 하위 서비스의 제공이 허용됨.</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부속서 2가(국영무역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에 나열된 제품. 외국 체인점 사업자는 중국 법과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중국 내에 설립된 어떠한 파트너도 선택할 자유를 가질 것임.</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D. 프랜차이징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E. 고정장소 외에서의 도매 또는 소매 서비스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⁵</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⁵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관한 작업반 보고서의 제 310 항 참조.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5. 교육 서비스 | | | |
| (군대, 경찰, 정치적 및 정당 학교 교육과 같은 특별 교육 서비스는 제외 됨) |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부분 외국인 투자 학교가 허용 되며 외국인의 과반수 지분 소유가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과 다음 외에는 약속 안함:</p> <p>외국의 개인 교육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학교 및 그 밖의 교육 기관에 의하여 초청되거나 고용될 경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음.</p> |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자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 보유, 그리고 - 적합한 전문직 직함 또는 자격증, 2년 전문직 경력 | |
| A. 초등교육 서비스 (CPC 921, CPC 92190 내의 국가의 무교육은 제외됨) | | | |
| B. 중등교육 서비스 (CPC 922, CPC 92210 내의 국가의 무교육은 제외됨) | | | |
| C. 고등교육 서비스 (CPC 923) | | | |
| D. 성인교육 서비스 (CPC 924, 미용술, |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p>스파 및 침술에 관한 비학문적 훈련을 포함함)</p> <p>E. 그 밖의 교육 서비스 (CPC 929, 다음 분야의 비학문적 훈련을 포함함: a. 영어 b. 요리 c. 수공예</p> |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6. 환경 서비스 (환경 품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 조사는 제외됨) | | | |
| | | | |
| A. 폐수 서비스 (CPC 9401) | (1) 환경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 |
| B.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 (2) 제한 없음. | (2) 제한 없음. | |
| C. 배기 가스 정화 서비스 (CPC 9404) |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 (3) 제한 없음. | |
| D.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5)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G. 위생 서비스 (CPC 9403) |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E.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 (CPC 9406, 자연보호구역과 람사르 습지의 조성 및 운영은 제외됨) | <p>(1) 환경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환경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에 의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며, 외국인의 과반수 지분 소유가 허용 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F.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CPC 9409) |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7. 금융 서비스 | | | |
| A.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⁶ | <p>(1) 다음 외에는 약속 안함.</p> <p>(a) 재보험</p> <p>(b)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 그리고</p> <p>(c) 대규모 상업적 위험,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 그리고 재보험에 대한 보험 중개</p> <p>(2) 보험중개는 약속 안함. 그 밖에는 제한 없음.</p> <p>(3) A. <u>설립 형태</u> 외국 손해보험업자는 설립 형태에 제한 없이, 지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다음 외에는 제한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보험기관이 제3자 자동차 책임보험을 수행하는 것 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 | |

⁶ 이 양허표에 포함된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한 후에 외국 보험업자에게 제공되는 어떠한 추가 인가(지점 설립, 하위 지점 설립 또는 그 밖의 법적 형태를 통한 기득권을 갖는 투자의 확대를 포함한다)는 그러한 요청을 한 다른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이 허용됨.</p> <p>외국 생명보험업자는 설립 형태에 제한 없이, 지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이 허용됨.</p> <p>외국 보험중개회사는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이 허용됨.</p> <p>중국에 외국인 투자 보험회사를 설립한 외국 보험회사는 중국 내 지점 설립이 허용됨.</p> <p>중국에 외국인 투자 보험중개회사를 설립한 외국 보험</p> | <p>국 보험기관은 의무 보험 사업에 종사하지 않음.</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중개회사는 중국 내 지점 설립이 허용됨.</p> <p>B. <u>사업 범위</u> (첨부 4 참조: “일괄보험증권”의 정의) 외국 손해보험업자는 “일괄보험증권” 보험/지리적 제약이 없는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내국민 대우에 따라, 외국 보험 중개인은 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중국의 중개인보다 늦지 않게 “일괄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p> <p>적격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p>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에서 보험대리 사업과 손해 사정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됨.</p> <p>외국 보험중개회사의 사업 범위는 중국 보험중개회사 의 사업 범위와 동일할 것 임.</p> <p>외국 손해보험업자는 외국 및 국내 고객 모두에게 전 범위에 걸친 손해보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 됨.</p> <p>외국 보험업자는 외국인과 중국인에게 건강보험, 개인/ 단체 보험 및 공적연금/사</p>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적연금 보험을 제공하는 것 이 허용됨.</p> <p>외국 보험업자는 발급되는 허가 전수에 관한 지리적 또는 양적 제약 없이 지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서 생명 및 손해보험에 대 한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허용됨.</p> <p>C. <u>허가</u> 허가는 경제적 수요심사나 허가에 대한 양적 제한 없 이 발급됨. 외국 보험기관 의 설립을 위한 자격은 다 음과 같음.</p>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전년도 말에 미화 50 억 달러를 초과하는 총 자산을 보유함. 다만, 보험 중개인은 제외됨.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보험 및 증권은 제외됨) 아래 나열된 은행 서비스: (a)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b)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c) 금융 리스 | <p>(1) 다음 외에는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 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기업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a)호부터 (k)호까지에 나열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p>(2) 제한 없음.</p> <p>(3) A. <u>지리적 적용범위</u> 외화와 현지통화 영업의 경</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건전성 조치를 제외하고, 외국 금융기관은 제한이나 사안별 승인에</p> | <p>금융 리스서비스의 경우, 외국 금융 리스회사는 국내 회사와 동시에 금융 리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p>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d)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 수표 및 은행수표(수출입 결제를 포함함)를 포 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 <p>우, 지리적 제한이 없음.</p> <p>B. <u>고객</u></p> <p>외화 영업의 경우, 외국 금 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제한 없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허용됨.</p> | <p>대한 필요성 없이, 외국인 투자 기 업, 비중국인인 자연인, 중국인인 자연인 및 중국 기업과 함께 사업 할 수 있음. 그 외에는 제한 없 음.</p> | |
| (e) 보증 및 약정 | | | |
| (f)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외환 | <p>현지통화 영업의 경우, 고객 에 대한 관련 요건은 건전성 에 한정됨.</p> <p>C. <u>허가</u></p> <p>중국의 금융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인가의 기준 은 건전성에 한정됨(즉, 경 제적 수요심사나 허가에 대 한 수량제한이 포함되지 않 음).</p>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한 자동차 자금 조 달 | <p>(1) 다음 외에는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 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 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 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 여 (a)호부터 (k)호까지에 나열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 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증권 | <p>(1) 다음 외에는 약속 안함.</p> <p>(a) 외국 증권기관은 B 지분 사업에 직접적으로(중국 증개인 없이) 관여할 수 있음.</p> <p>(b) 중국의 관련 법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인 적격기관국내투자자(QDII)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DII의 계좌 거래 - 증권거래자문이나 포트폴리오 관리 제공, 그리고 - QDII의 해외 자산의 보관 제공 | <p>(1) 제한 없음.</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2) 제한 없음.</p> <p>(3) (a) 다음 외에는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증권기관의 중국 내 대표사무소는 모든 중국 증권 거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음. - 규제 요건과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승인 시, 완전 외국인 소유 펀드운용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중개인 없이) 국내 증권 투자펀드운용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됨. - 규제 요건과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승인 시, 완전 외국인 소유 증권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중개인 없이) 국내 증권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선물회사의 100퍼센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됨. <p>(b) 중국의 금융 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인가의 기준은 전전성에 한정됨(즉, 경제적 수요심사나 허가에 대한 수량제한이 포함되지 않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8.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 | | |
| C. 사회 서비스 -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CPC 93311 및 93323의 일부)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에 고령자를 위한 완전 외국인 소유 영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 | |
| A. 호텔(아파트 빌딩을 포함함) 및 레스토랑 (CPC 641-643)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에 호텔 및 레스토랑 설립체를 건축, 개축 및 운영할 수 있음.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과 다음 외에는 약속 안함. - 중국 내 부분 외국인 투자 호텔 및 레스토랑과의 계약에 서명한 외국 관리자, 요리사를 포함한 전문가 및 고위 임원은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B. 여행 알선 대행 (CPC 7471)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 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은 중국인의 해외 여행 및 홍콩, 마카오 및 대만으로의 여행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제외) | | | | |
| D. 스포츠 및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CPC 96411, 96412, 96413에 한 정됨, 요가가 포함되 며 골프와 e-스포츠 는 제외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11. 운송 서비스 | | | |
| A. 해상 운송 서비스 - 국제 운송 (화물 및 여객) (CPC 7211 및 7212, 연안 운송 서비스는 제외됨) | <p>(1) (a) 정기선 해운(여객 운송을 포함함): 제한 없음.</p> <p>(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여객 운송을 포함함):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a) 선박승무원: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고용된 핵심인력: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a) 제한 없음.</p> <p>(b)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a)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항구에서의 다음의 서비스는 국제 해상 운송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가능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선 예선 지원 식량 · 연료 공급 및 급수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선석 배정 항행원조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서비스 비상보수시설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H. 부수 서비스 (a)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CPC 741) (c) 해상 운송을 위한 통관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e) 해운 중개 서비스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B. 내륙 수로 운송 (b) 화물 운송 (CPC 7222) | <p>(1) 외국 선박에 개방된 항만에서의 국제 해운만 허용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 <p>(1) 시장접근열에 기재된 사항과 같이 제한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C. 항공 운송 서비스 (d)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CPC 8868)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에서 부분 외국인 투자 항공기 수리 및 정비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중국측이 그 기업의 지배주를 소유하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그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짐.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 |
| - 컴퓨터 예약 시스템 (CRS) 서비스 | <p>(1) (a) 외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은 중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하여 중국 항공 기업과 항공 중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b) 외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은 양자 간 항공 협정에 따라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외국 항공 기업에 의하여 중국의 목적지에 설립된 대표사무소 및 영업</p> | (1) 제한 없음.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사무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c) 외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에 대한 항공 중개인의 직접 접근 및 사용은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의 승인을 조건으로 함.</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내 중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을 가진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중국측은 그 기업의 지배주를 소유하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음. 기업 설립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p> |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E. 철도 운송 서비스 - 철로를 통한 화물 운송(CPC 711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F. 도로 운송 서비스 - 트럭이나 자동차를 통한 도로 화물 운송 (CPC 712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 | |
| 여객 운송 - 도시 및 교외 정기 운송(CPC 71211) - 도시 및 교외 특별 운송(CPC 71212) - 도시간 정기 운송 (CPC 71213) - 도시간 특별 운송 (CPC 71214)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H. 모든 형태의 운송 부 수 서비스 - 창고업 서비스(CPC 742) |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CPC 748)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최소 3년 연속의 경험이 있는 외국 화물 운송 주선 업체는 중국에서 부분 외국인 투자 화물 운송 주선 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p> <p>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운영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음.</p> <p>중국에서 1년 운영한 후에,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은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p> <p>외국 화물 운송 주선 업체는 첫 번째 기업이 2년간 운영한 후에 두 번째 부분 외국인 투자</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CPC 749의 적용대상 이 되는 화물의 조사. 다만, 화물 조사 서비스에 대한 법정 조사 서비스는 제외됨.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본국에서 3년을 초과하여 조사 서비스에 종사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미화 350,000달러 이상의 등록된 자본으로 기술적 검사, 분석 및 화물 조사를 수행하는 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12.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서비스 | | | | |
| -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 | | |
| - 이발 및 그 밖의 미 용 서비스 (CPC 970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 | | |

중국의 최혜국 대우 분야별 적용 부록

이 부록은 제8.6조(최혜국 대우) 제1항나호에 따라 중국의 약속을 규정한다.

I. 수평적 제한

제8.6조(최혜국 대우)에 따른 최혜국(MFN) 대우 약속의 측면에서 중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중국에 대해 제8.6조(최혜국 대우)에 따른 “비당사자”라는 용어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의미 내에서 다음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포함하지 않는다: 홍콩, 마카오 및 대만 · 평후 · 진면 · 마쭈 개별관세영역(중화 타이베이).
- 나. 중국은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시행 중에 있거나 서명된 양자 또는 다자 국제 협정에 따라 어떠한 서비스 공급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⁷.
- 다. 중국은 항공, 수산업 또는 구조를 포함한 해양문제와 관련한 시행 중에 있거나 서명된 양자 또는 다자 국제협정에 따라 어떠한 서비스 공급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라. 중국은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 지대에 한정되는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 마. 중국은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바.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안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 중국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투자 심사를 포함하여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항은, 어떠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대하여, 경제통합 또는 무역 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를 포함한다.

II. 최혜국 분야별 적용범위

| | |
|---|----------|
| 1. 사업 서비스 | |
| A. 전문직 서비스 | |
| (a) 법률 서비스(CPC 861, 중국법 실무는 제외됨) | 최혜국(MFN) |
| (c) 세무 서비스(CPC 8630) | 최혜국(MFN) |
| (d) 건축 서비스(CPC 8671) | |
| - 계획 설계 | 최혜국(MFN) |
| - 기타 | 최혜국(MFN) |
| (e)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 |
| - 계획 설계 | 최혜국(MFN) |
| - 기타 | 최혜국(MFN) |
|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3) | |
| - 계획 설계 | 최혜국(MFN) |
| - 기타 | 최혜국(MFN) |
| (g) 도시 계획 서비스(일반 도시 계획은 제외됨) (CPC 8674) | |
| - 계획 설계 | 최혜국(MFN) |
| - 기타 | 최혜국(MFN) |
|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 |
| (c) 경영 컨설팅 서비스(CPC 865) | 최혜국(MFN) |
| (f) 임업 부수 서비스(CPC 8814) | 최혜국(MFN) |
| (o) 빌딩 청소 서비스(CPC 874) | 최혜국(MFN) |
| (q) 포장 서비스(CPC 876) | 최혜국(MFN) |
| (s) 컨벤션 서비스(CPC 87909) | 최혜국(MFN) |
|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 | 최혜국(MFN) |
|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
| B. 쿠리어 서비스 (CPC 75121, 2001년 12월 11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의 관련 법에 의하여 중국 우편 당국에 특별히 유보 된 것은 제외됨) | 최혜국(MFN) |

| | |
|--|----------|
| D. 시청각 서비스 | |
| – 영화관 서비스 | 최혜국(MFN) |
|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CPC 511, 512, 513 ⁸ , 514, 515, 516, 517, 518 ⁹) | 최혜국(MFN) |
| 4. 유통 서비스(첨부 3의 정의에 따름) | |
| D. 프랜차이징 | 최혜국(MFN) |
| 6. 환경 서비스 (환경 품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 조사는 제외됨) | |
| A. 폐수 서비스(CPC 9401) | 최혜국(MFN) |
| B.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CPC 9402) | 최혜국(MFN) |
| C. 배기 가스 정화 서비스(CPC 9404) | 최혜국(MFN) |
| D. 소음 저감 서비스(CPC 9405) | 최혜국(MFN) |
| G. 위생 서비스(CPC 9403) | 최혜국(MFN) |
| E.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CPC 9406, 자연보호구역 과 람사르 습지의 조성 및 운영은 제외됨) | 최혜국(MFN) |
| F.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CPC 9409) | 최혜국(MFN) |
|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
| A. 호텔(아파트 빌딩을 포함함) 및 레스토랑(CPC 641-6 43) | 최혜국(MFN) |
| 11. 운송 서비스 | |
| E. 철도 운송 서비스 | |
|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 (CPC 7112) | 최혜국(MFN) |
| F. 도로 운송 서비스 | |
| – 트럭이나 자동차를 통한 도로 화물 운송(CPC 7123) | 최혜국(MFN) |
| 여객 운송 | 최혜국(MFN) |
| – 도시간 정기 운송(CPC 71213) | |
|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CPC 748) | 최혜국(MFN) |

⁸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관련된 준설 서비스를 포함한다.

⁹ CPC 518의 적용범위는 외국 건설 기업의 서비스 공급시 그 기업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운영자를 동반하는 건설 또는 철거 기계의 임대 및 리스 서비스에만 한정된다.

첨부 1

중국의 미래자유화 약속

이 첨부는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3항에 따라 미래 자유화(FL)에 관한 중국의 약속을 규정한다.

I. 수평적 제한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3항에 따른 미래자유화(FL) 약속의 측면에서 중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중국은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나. 중국의 미래자유화 약속은 자신의 수평적 양허에 적용되지 않는다.
- 다. 중국은 자신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중국에 의하여 약속된 사항을 제외하고 국내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약속 안함을 유지한다.

II. 미래자유화(FL) 약속의 분야별 적용범위

| 1. 사업 서비스 | |
|---|-----------|
| A. 전문적 서비스 | |
| (a) 법률 서비스(CPC 861, 중국법 실무는 제외됨) | 미래자유화(FL) |
| (c) 세무 서비스(CPC 8630) | 미래자유화(FL) |
| (d) 건축 서비스(CPC 8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설계- 기타 | 미래자유화(FL) |
| (e)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설계 | 미래자유화(FL) |
| (g) 도시 계획 서비스(일반 도시 계획은 제외됨) | |

| | |
|--|-----------|
| (CPC 8674) | |
| – 계획 설계 | 미래자유화(FL) |
| – 기타 | 미래자유화(FL) |
|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는 공급의 수단으로서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컨텐츠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되는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지 않음) | |
| 컴퓨터설비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CPC 841) | 미래자유화(FL) |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용 기계 및 기기에 대한 정비 및 수리 서비스(CPC 845 및 886) | 미래자유화(FL) |
|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 |
| (c) 경영 컨설팅 서비스(CPC 865) | 미래자유화(FL) |
|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 | 미래자유화(FL) |
| (f) 임업 부수 서비스(CPC 8814) | 미래자유화(FL) |
| (o) 빌딩 청소 서비스(CPC 874) | 미래자유화(FL) |
| (q) 포장 서비스(CPC 876) | 미래자유화(FL) |
| (s) 컨벤션 서비스(CPC 87909*) | 미래자유화(FL) |
|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 | 미래자유화(FL) |
|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
| B. 쿠리어 서비스 (CPC 75121, 2001년 12월 11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시의 관련 법에 의하여 중국 우편 당국에 특별히 유보된 것은 제외됨) | 미래자유화(FL) |
| D. 시청각 서비스 | |
| – 영화관 서비스 | 미래자유화(FL) |
| 4. 유통 서비스(첨부 3의 정의에 따름) | |
| D. 프랜차이징 | 미래자유화(FL) |
|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
| A. 호텔(아파트 빌딩을 포함함) 및 레스토랑(CPC 641–64 3) | 미래자유화(FL) |
| 11. 운송 서비스 | |

| | |
|--|-----------|
| E. 철도 운송 서비스 | |
| –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CPC 7112) | 미래자유화(FL) |
| F. 도로 운송 서비스 | |
| – 트럭이나 자동차를 통한 도로 화물 운송(CPC 7123) | 미래자유화(FL) |
| 여객 운송 | 미래자유화(FL) |
| – 도시간 정기 운송(CPC 71213) | |
| – CPC 749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 조사. 다만, 화물 조사 서비스에 대한 법정 조사 서비스는 제외됨. | 미래자유화(FL) |

첨부 2

참조 문서

적용범위

다음은 기본통신 서비스를 위한 규제적 틀에 관한 정의 및 원칙이다.

정의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될 수 없는 것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이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 보장장치

1.1 통신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1.2 보장장치

위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는 것, 그리고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2. 상호접속

2.1 이 절은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한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의 연결에 적용된다

2.2 보장되는 상호접속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될 것이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가. 비차별적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제공된다.

나.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2.3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될 것이다.

2.4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약정 또는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할 것을 보장한다.

2.5 상호접속: 분쟁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가. 언제라도, 또는

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합리적인 기간 후에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율이 전에 수립되지 않은 한도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제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일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 기관을 이용할 것이다.

3. 보편적 서비스

모든 당사자는 자신이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당사자에 의하여 정의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4. 면허 기준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이다.

가. 모든 면허 기준과 면허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나. 개별 면허의 조건

요청이 있는 경우, 면허의 거부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될 것이다.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어떠한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이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가자에 대하여 공평하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이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않는다.

1997년 1월 16일

(97-0173)

기본 통신 그룹

의장에 의한 주석개정

기본 통신의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적용 가능한 가정에 관한 간략하고 단순한 주석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많은 대표단들이 제안하여 온 바이다. 일부 주석은 대표단이 자신들의 양허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양허의 의미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주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확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기본 통신 서비스 약속 양허표에 관한 주석

1. 분야란에 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분야란에 나열된 모든 기본 통신 서비스는

가. 공중 및 비 공중 사용을 위한 지역, 장거리 및 국제 서비스를 포함한다.

나. 설비에 기반하여 또는 재판매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

다. 모든 기술 수단(예, 케이블¹⁰, 무선, 위성)을 통하여 공급될 수 있다.

2. 하위분야(g)-전용회선 서비스-는 분야란에 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그 밖의 모든 기본 통신 서비스 하위분야에 나열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망 용량을 판매하거나 리스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능력을 포함한다. 이는 케이블, 무선 및 위성 망을 통한 용량을 포함할 것이다.

¹⁰ 모든 종류의 케이블을 포함한다.

3. 위에 언급된 1과 2를 고려하여, 휴대 또는 이동 서비스를 별도의 하위분야에 나열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회원국은 그러하게 나열하고 있고, 여러 회원국의 제안은 이러한 하위분야만 양허하고 있다. 따라서 양허표의 광범위한 변경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이러한 하위분야에 별도의 기재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정본: 영어

기본 통신 그룹

의장 주석

전파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시장접근 제한

많은 회원국은 자국 양허표의 시장접근열에 그 약속이 “전파/주파수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한다. 전파의 물리적 성질이나 그 사용에 내재한 제한에 비추어, 회원국들이 정당한 전파 관리 정책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구에 의존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양해할 만하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의 양허표의 시장접근열에 나열된 그러한 “전파/주파수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와 같은 문구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전파/주파수 관리 그 자체로는 제16조에 따라 나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조치가 아니다. 더 나아가 GATS에 따라 각 회원국은, GATS 제6조와 그 밖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파/주파수 관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현재 및 미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규제적 원칙에 관한 참조 문서에 따라 추가적인 약속을 한 회원국은 참조 문서 제6항에 의하여 구속된다.

그러므로 “전파/주파수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와 같은 문구는 불필요하며 회원국의 양허표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 3

유통 서비스

유통 무역서비스는 네 가지 주요 하위분야로 구성된다.

- 위탁중개인 서비스
- 도매업
- 소매업, 그리고
- 프랜차이즈

각 하위분야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상품 재판매와, 재고관리, 조립, 분류 및 큰 용적의 등급 책정, 큰 용적의 해체 및 작은 용적으로의 재분배, 배달 서비스, 냉장, 보관, 창고 및 차고 서비스, 판매 촉진, 마케팅 및 광고, 설치, 그리고 정비, 수리 및 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판매 후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관련 하위서비스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유통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CPC 61, 62, 63 및 8929의 적용대상이다.

위탁중개인 서비스는, 대리인, 중개인 또는 경매인이나 그 밖의 도매업자에 의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초하는 물품/상품의 판매 및 관련 하위서비스로 구성된다.

도매업은 소매업자, 산업, 상업, 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 사업 사용자 또는 그 밖의 도매업자에 대한 물품/상품의 판매 및 관련 하위서비스로 구성된다.

소매업서비스는 개인 또는 가계의 소비를 위하여 고정장소(예, 상점, 매점 등) 또는 고정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상품의 판매 및 관련 하위서비스로 구성된다.

프랜차이즈서비스는 수수료 또는 로열티의 대가로 상품, 상표 또는 특정 사업구조 시스템에 관한 사용의 판매로 구성된다. 상품 및 상표의 프랜차이즈는 수수료 또는 로열티를 대가로 상표의 사용을 포함하고 상표 상품의 배타적인 판매를 위한 의무를 포함할 수 있다. 사업구조 프랜차이즈는 수수료 및 로열티를 대가로 전체 사업 컨셉트의 사용을 포함하고 상표, 사업계획 및 교육자료의 사용 및 관련 하위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첨부 4

보험: “일괄보험증권(Master Policy)” 의 정의

일괄보험증권은 다른 장소에 위치한 동일한 법인의 재산 및 부채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증권이다. 일괄보험증권은 보험업자의 본사 영업부 또는 그의 권한을 받은 지방 단위 지점의 영업부에 의해서만 발급될 수 있다. 그 밖의 지점들은 일괄보험증권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 가입 대상이 국가중대건설사업인 일괄보험증권사업. 국가중대건설사업(즉,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목록을 작성하고 매년 발표하는 사업)의 투자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의 법인과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보험업자로부터 일괄보험증권을 구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투자가 모두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며(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의 재투자를 포함한다), 투자자의 투자의 합계가 전체 투자의 15퍼센트를 초과한다.

투자는 일부는 해외로부터 그리고 일부는 중국(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의 재투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중국 투자자의 투자의 합계가 전체 국내 투자의 15퍼센트를 초과한다.

해외로부터 모든 투자를 받은 사업의 경우, 모든 보험업자는 일괄보험증권 형태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동일한 법인의 다른 보험 가입 대상에 적용되는 일괄보험증권.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동일한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는 그러한 보험 가입 대상(금융, 철도 및 우편 그리고 통신 산업과 기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일괄보험증권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기초하여 발급될 수 있다.

보험료세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법인 또는 회계부서가 위치한 곳에 설립된 보험회사는 일괄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도시 또는 중도시로부터의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보험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한다면, 보험 가입자의 법인 또는 회계부서가 그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도시에 있는 보험업자는 일괄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동차보험, 신용보험, 고용자책임보험, 의무보험 및 중국은행 및 보험규제위원회에 의하여 제외된 그 밖의 보험사업은 보험 가입 대상이 위치한 곳 외의 장소에 위치한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되거나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없고 일괄보험증권에 따라 적용될 수 없다.